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원활한 사안 처리를 위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운영에 대해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4년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운영 개요

1.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를 말한다.

2. 조사관의 목적

학교폭력 조사·처리 과정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사관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4. 조사관의 역할

가.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제로센터로부터 사안을 배정받은 후 학교폭력 파·가해 사실에 대한 조사 실시
- 관련 학생 및 보호자와 면담 실시
-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시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면담과정에서 자체해결 동의서를 조사관에게 제출 시 조사관이 학교에 전달)
- 필요시 관련 교사와의 면담 진행 등

나.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및 학교장(전담기구)에 조사결과 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제로센터(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에 보고

다.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및 사안 조사결과 보고

라. SPO(학교전담경찰관)와 사안 관련 정보공유, 사안조사 자문 요청 등 협력 체계 구축
마.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

【조사관의 역할】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가·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관련 교사 및 학부모 등 면담
 2.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의 학교폭력 조사결과 보고
 3. 법 제20조의6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제1호에 따른 조사 자문 요청
 4. 그밖에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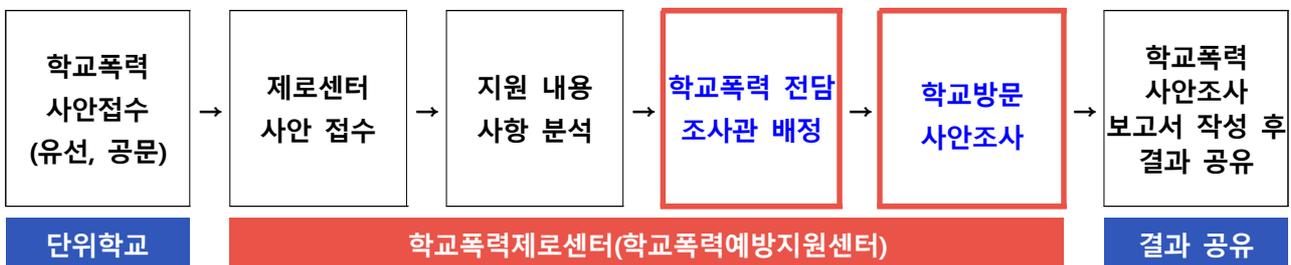
5. 조사관 운영

가. (사안 접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가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

나. (조사관 배정) 접수된 사안 내용 및 유형 등에 따라 전담 조사관 배정

다. (사안 조사) 조사관은 배정된 학교와의 일정 조정 후 학교로 신속히 이동

→ 관련 학생 면담, 자료 검토 등을 통한 사안조사 후 보고서 작성 및 결과 공유



[전담 조사관 운영 흐름도]

2024. 3. 21.

남 관 초 등 학 교 장